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정 1989. 8. 8. 조례 제 974호
개정 1992. 11. 30. 조례 제1219호
개정 1996. 7. 18. 조례 제1458호
전부개정 2008. 7. 7. 조례 제2103호
일부개정 2017. 11. 16. 조례 제2884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3. 2. 조례 제3170호(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79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 또는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수여대상) ① 안양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3.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제3조(명예시민 추천권자) 시의회, 공공기관과 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시민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증서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명예시민증서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수여방법) ① 명예시민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으며, 패 또는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여자의 권리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12. 30.>

②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시민과 동등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의 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이 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등 본청 실·국장 2명과 시의회 의원 3명 및 그밖에 행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1. 16.>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7. 7. 조례 제210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8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본청 국장”을 “본청 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
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		생년월일	

○ 공적사항(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주요경력

연월일	내 용	연월일	내 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추천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명예시민증서(외국인)

성명:

국적:

대한민국 안양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귀하에게 안양시 명예시민증서를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안양시의 관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안양시장 (인)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Anyang, I, as the Mayor of the City,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pon

(Name) of (Nationality).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to affixed my signature and the seal of the City of Anyang.

(, ,)

(signature)

Mayor of Anyang City

Republic of Korea

[별지 제3호서식]

명예시민증서(내국인)

주 소:

성 명: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

연번	국적	주소 또는 소 속	직업 또는 직 위	성명	생년월일	공적개요	수여		비고
							일시	장소	